

特輯

國家技術資格法 施行令 公布에 앞서

國家技術資格法

全文17條附則

國家技術資格法이 7월 1일부터 發効 할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全文17條附則으로 되어있는 이 法은 技術資格에 關한 基準과 名稱을 統一하여 適正한 資格制度를 確立하고 그 管理와 運營을 効率化함으로써 技術人力의 資質 및 社會的地位의 向上과 經濟發展에 奇與함을 目的으로하고 있는데 對象分野는 機械金屬, 化工電氣, 電子, 通信, 造船, 航空, 土木, 纖維, 建築, 鉱業, 其他 產業과 密接한 關聯이 있는 技術分野의 資格을 規定하는것으로 技術系別로 볼때에는 建設과는 많은 關聯이 있는 分野가 包含되고 있음으로 建設界에서는 至大한 關心을 表明하고 있는데 同法의 全文은 다음과 같다.

國家技術資格法(法律第2672号) 제 1 조(目的) 이 法은 기술자격에 關한 기준과 명칭을 통일하여 적정한 資格規制를 確立하고 그 관리와 運營을 効率化함으로써 기술人力의 資質 및 社會的地位의 向上과 경제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기술資格의 定義) 이 法에서 기술자격 이라함은 機械, 金屬, 化工, 電氣, 電子, 通信, 造船, 航空, 土木, 建築, 섬유, 鉱業 기타 產業과 密接한 關련이 있는것으로 大統領令이 定하는 기술분야 자격을 말한다.

제 3 조(기술자격의 구분과 기준) ① 기술자격은 기술계와 기능계로 분류한다. ② 기술자격의 등급 기준 및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4 조(기술자격의 취득) 이 法에 의한 기술자격 취득자(이하 기술자격취득자라한다)는 주무부장관이 시행하는 기술자격에 합격한 자라야 한다.

제 5 조(기술자격검정의 수험 의무) ① 교육법에 의한 각급 실업계 및 기술계학교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에서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하는자는 문교부장관이 제 4 조의 규정에 의해 주무장관으로서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직업훈련법에 의한 직업훈련을 행하는 기관에서 제 2 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분야에 속하는 직업훈련의 과정을 이수한자는 주무장관이 시행하는 기술자격검정을 받아야 한다.

제 6 조(기술자격검정의 基準等) ① 이 法에 의

한 기술자격검정의 基準, 方法 및 절차는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② 主務部長官이 기술자격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科學技術處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第 7 條(기술자격검정과목의 免除) ① 外國에서 資格을 取得한 자가 이 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을 받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当該기술분야의 檢정과목의 전부 또는 一部를 면제할 수 있다.

② 다른 法令에 依하여 資格을 取得한 者가 이 法에 依한 技術資格檢定을 받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当該 技術分野의 檢定科目의 一部를 免除할 수 있다.

③ 技術資格取得者가 이 法에 依한 等級의 다른 技術資格檢定을 받고자 할 때에는 当該檢定의 科目中 重複되는 科目은 이를 免除한다.

第 8 條(登 錄) ① 技術資格取得者는 當該 檢定을 施行한 主務部處에 登錄하여야 한다.

② 主務部長官은 第一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이 있을 때에는 그 登錄事項은 勞動府長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③ 第3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에 關하여 必要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9 條(기술자격수첩) ① 主務部長官은 第 8 條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등록한 자에게는 기술자격수첩을 교부한다.

② 기술자격수첩을 분실 또는 폐손한 者에게는 그 申請에 의하여 이를 재교부한다.

③ 第 1 項 및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기술자격수첩의 교부, 재교부 및 그 관리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④ 기술자격수첩은 他人에게 貸與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0條(기술자격取得者에 대한 우대) ① 政府와 地方自治團體는 기술取得者的 經濟的, 社會的地位의 적정한 維持와 그 就業 및 身分保障에 關하여 必要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政府와 地方自治團體는 第 2 條의 規定에 依한 技術分野에 關한 營業中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營業을 許可하거나 許可 또는 權利의 設定 其他利益을 부여하는 데에는 当該 技術分野의 技術資格取得者를 우선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技術資格取得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그 資格과 同種 同等한 다른 法令에 依한 資格의 取得者와 当該法令上 같은 待遇를 받는다.

第11條(기술資格取得者의 誠實義務) 技術資格取得者는 誠實히 그 業務를 遂行하여야 하며 그 品位를 損傷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2條(기술資格의 取消등) ① 主務部長官은 不正不法으로 技術資格을 取得한 者에 对하여 그 技術資格을 取消하여야 한다.

② 主務部長官은 技術資格取得者가 그 業務를 遂行함에 있어서 故意 또는 重大한 過失로 他人에게 損害를 加하였거나 第11條의 規定에 違反할 때에는 그 技術資格을 取消하거나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一定한 期間 그 技術資格을 停止시킬 수 있다.

第13條(優待의 制限) 技術資格取得者는 다음 각号의 1에 該当하는 때에는 第10條의 規定에 依한 優待를 받지 못한다.

1. 禁治產者 또는 限定治產者

2. 破產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금고이상의 刑을 받고 그 執行이 終了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確定된지 二年이 經過하지 아니한 者

4. 懲戒에 依하여 罷免의 处分을 받은 後 二年이 經過하지 아니한 者

5. 心身障礙로 因하여 業務를 遂行할 수 없는 者

第14條(기술資格의 基準등) ① 다른 法令에 依한 資格中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法에 依한 技術資格에相當하다고 認定되는 資格의 等級 基準 및 名稱은 다른 法令의 規定에 不拘하고 이法에 依한다.

② 다른 法令에 依한 資格을 取得한 者로서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이法에 依한 技術資格을 取得한 者로 본다.

③ 第7條 第3項, 第8條乃至 第11條 및 第13條의 規定에 依한 者에게 이를 適用한다.

第15條(手數料) 다음 각号의 1에 該当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手數料를 納付하여야 한다.

1. 技術資格檢定(第5條의 規定에 依하여 技術資格檢定을 除外한다)을 받고자 하는 者.

2. 第8條 第1項의 規定에 依하여 登錄하는 者.

3. 第9條 第2項의 規定에 依하여 기술자격수첩의 再交付를 받고자 하는 者.

第16條(權限의 委任등) 主務部長官은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法에 의한 그 權限의 일부를 所屬機關의 長, 서울特別市長, 釜山市長 또는 道知事에게 委任하거나 다른 行政機關의 長 또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者에게 위임할 수 있다.

第17條(施行令) 이法 시행에 關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이 定한다.

附 則

第1條(施行日) 이法은 1974年 7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다른 法令에 依한 資格取得者에 对한 經過措置) ① 이法施行當時 다른 法令에 依하여 資格을 取得하고 있는 者 中 그 資格이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依하여 이法에 依한 技術資格에 相當하다고 認定되는 者는 이法에 依한 기술자격을 取得한 者로 본다.

第1項의 規定에 該当하는 者는 이法에 依한 該當技術資格의 名稱에 따라야 한다.

③ 第7條 第3項, 第8條, 第11條 및 第13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者에게 이를 準用한다.